

경력구분	인정대상기관	인정대상경력
7) 재외교육기관 및 재외 교육단체 근무 경력 (5할 이내)	◦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등록된 재외교육 기관 및 재외교육단체 ※ 한국학교 또는 교육원은 제외한다.	◦ 근무한 경력
8) 학원 강사 근무 경력 (5할 이내)	◦ 교육감에게 등록된 학원 또는 교육 감에게 신고한 교습소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의 강사 또는 신고된 교습소의 교습자로 근무한 경력 ※ 교습자 근무 경력은 관할 세무세에 사업자 등록,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내역을 확인 ※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교습소의 강사 /교습자 경력은, 근로소득세 납입증명서 등 객관적 증명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3할을 인정한다.
9) 회사 근무 경력 (4할 이내)	◦ 「상법」 제169조에 따라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같은 법 제170조에 규정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외국 회사 또는 외국 사설연구소 포함)	◦ 점원, 외교인(보험판매원, 외판원 등)이 아닌 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 선박에서 근무한 경력
10) 그 밖의 직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경력(3할 이내)	◦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및 사단법인 ◦ 개별법에 의한 연구기관 등 법인체 ◦ 법인격이 없는 개인회사 ◦ 개인병원 또는 의료법인이 아닌 종합병원 ◦ 「정당법」에 의해 설립된 정당의 사무처 ◦ 학생을 직접 방문·지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 제170조에 규정된 회사 ◦ 기타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 간호사 자격(면허)증을 가지고 간호사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근무한 경력 ◦ 「정당법」 제30조에 규정된 유급사무직원 중 근무한 경력 ◦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으며 학생을 직접 방문하여 학습지 지도교사로 근무한 경력 ◦ 2011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임용된 교육공무원 중, 농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 「농지법」 제49조에 의한 농지원부에 명의 등록된 사람 -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에 의한 조합원 자격을 가진 사람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 ※ 본인 명의의 농지세 납입증명서 및 영수증, 농지등기부 등본, 당시 현지에 거주했던 주민등록등본 등을 검토하여 농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농지원부 명의 등록자와 부부관계이며 농지원부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여성 농업인은 면장이 발급한 경작사실 확인서를 통해서도 인정 가능 (인우증명, 사실증명 등은 제외)

비고: 위 표 제1호 및 제3호의 경력(제1호에 따른 경력 중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및 제3호가목의 경력은 제외한다) 중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한 경력(1주 동안 15시간 미만 근로한 경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환산한다. 이 경우 통상적인 근무시간 및 환산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